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35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 김도읍 · 구자근 · 인요한

이헌승 · 조배숙 · 장동혁

박성훈 • 신동욱 • 김성원
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「형사소송법」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, 불허하는 경 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.

한편,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으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록에 대해서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66조의3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·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피해자에 대해서는 열람·등사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음.

이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· 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,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 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94조의5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,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4조의5(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·등사)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변호사(이하 이 조에서 "피해자 등"이라 한다)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·물건(이하 이조에서 "서류등"이라 한다)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있다.

- ② 검사는 피해자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

- 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하여야 한다.

제2조(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·등사에 관한 적용례)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·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94조의5(피해자 등의 검사 보
	관 서류 등의 열람·등사) ①
	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
	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
	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
	는 그 배우자 · 직계친족 및 형
	제자매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
	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
	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
	<u>의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</u>
	매・변호사(이하 이 조에서
	<u>"피해자등"이라 한다)는 제266</u>
	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
	<u>·물건(이하 이 조에서 "서류</u>
	등"이라 한다)의 열람 또는 등
	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검사는 피해자등의 권리구
	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 수권 비자의 이하여 피이하다
	<u>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</u> 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
	라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
	다. 다만, 제59조의2제2항제2호
	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
	1 7 /10 2 /1 /1 6 - 1 - 0 - 1

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 다.

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 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 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 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 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 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 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<u>제294조의6</u> (현행 제294조의5와

제294조의5 (생략)